

	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0. 9. 28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, 검토, 심의하여 신속,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학전형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, 10인 내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며, 위원은 교무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, 간사는 입학관리 담당 직원 중에 1인으로 한다.

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, 간사는 회의록 기재 및 기타 업무상 실무를 담당한다.

제4조(임무)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신입생 모집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효과적인 정책개발

②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

③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(전형유형, 전형자료, 자격기준, 사정원칙, 전형일정, 고사의 진행 및 관리, 출제 및 채점방법 및 보안관리 등)

④기타 입학전형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, 각 위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